

선	기관의 장
람	



제5호 2022. 2. 9.(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2-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2-51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2-5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0

광양시 고시 제2022-53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11

광양시 고시 제2022-54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3

광양시 고시 제2022-55호 광양 북십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고시 15

광양시 고시 제2022-57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194호 도로 지정 공고 60

광양시 공고 제2022-215호 저곡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62

광양시 공고 제2022-257호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8

번호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수어천
점용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성명	(주)엘지유플러스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278
	면적	1m ²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통신전주
점용기간		2022. 2. 3. ~ 2026.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3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 2022-51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490	2022. 2. 9.	건물철거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전남 광양시 옥곡면 대죽2길 66		
3	전남 광양시 진월면 돈탁길 43-2		
4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현1길 15		
5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현1길 15-1		
6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현길 10		
7	전남 광양시 다압면 대청길 80-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9.

광 양 시 장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 일	고시 일
성불로	490	봉강면 구서리 182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9.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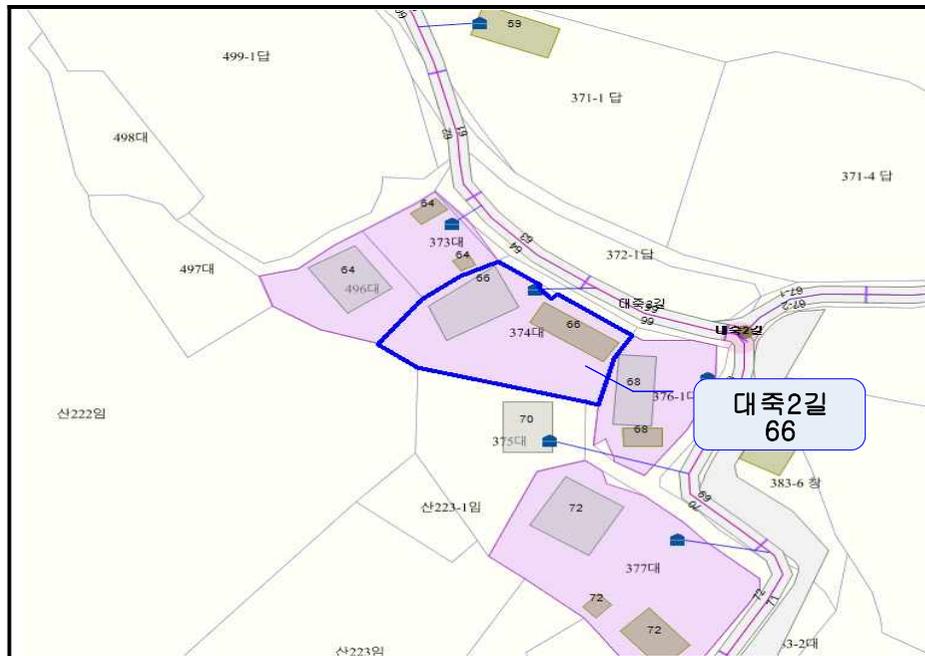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대죽2길	66	옥곡면 대죽리 374	▶ 건물철거 (건축과-3835(2022. 1. 27.)호에 의거)	2022. 1. 27.	2022. 2. 9.

☐ 현황도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돈탁길	43-2	진월면 오사리 1265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9.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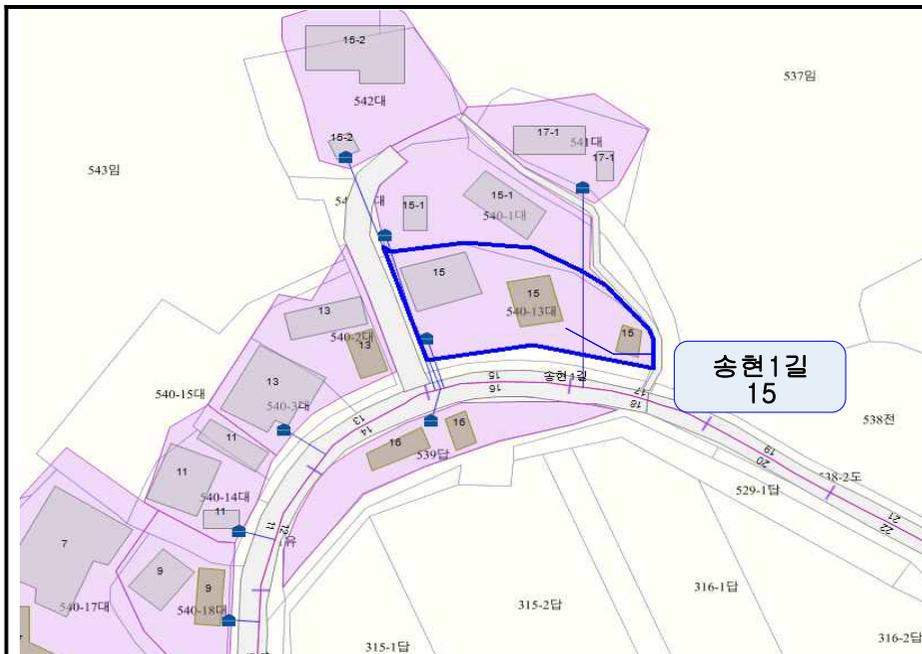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송현1길	15	진월면 송금리 540-13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9.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송현1길	15-1	진월면 송금리 540-1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9.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송현길	10	진월면 송금리 572-1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9.

☐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지 사유	폐지일	고시일
대청길	80-1	다압면 금천리 1404-1	▶ 건물철거 (건축과-3215(2022. 1. 24.)호에 의거)	2022. 1. 24.	2022. 2. 9.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광양시 고시 제2022 - 52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8일

광 양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내역

신 청 인		공 사 내 용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주 소	성 명	허가번호 (기 간)	장 소	목 적	면 적	총사업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 양 시 장 (환경과장,산단 과장)	제2019-2호 (2019. 6. 18. ~ 2034. 5. 31.)	광양시 태인동 1610-3번지선 해안 공유수면	섬진강 부유물 차단시설 설치	573.86 ㎡	39,884 천원	2022. 2. 8.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2. 2. 9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대흥1길 (1차중속도로)	길	옥룡면	옥룡면 용곡리 28-1	옥룡면 용곡리 25-12	도면 참조	126	4	20	140-1	140-14	대방과 흥룡마을에서 작명 및 일련번호식 부여	

▣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9.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120-12 외 5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2.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계	건물번호 부여 6건						
1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7-4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120-12	20220209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635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시내1길 25-1	20220209	20220204	옛 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 부여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634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시내1길 25	20220209	20220204	옛 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 부여	전남 광양시 황길동 315-1	전남 광양시 통사1길 11(황길동)	20220209	20220204	행정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 부여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167 외 33필지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 31-1	20220209	20081001	선소마을 중앙 도로에서 명명	
6	건물번호 부여	전남 광양시 광영동 854	전남 광양시 광영의암3길 30(광영동)	20220209	20200603	사업명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570호(2021. 12. 02.)와 관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의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광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68,339	감) 3,977	664,362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0,119	-	550,119	82.8	-
	준주거지역	37,408	-	37,408	5.6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954	-	53,954	8.1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668	-	9,668	1.5	-
	생산녹지지역	17,190	감) 3,977	13,213	2.0	-

나.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0,119	550,119	○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무상귀속협의 결과에 따른 제척사항 반영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7,408	37,408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3,954	53,954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668	9,668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7,190	13,213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 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③	광양 목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8,397	감) 3,977	664,362	2002. 12. 1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4,362	○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무상귀속 협의 결과에 따른 제척사항 반영

다.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 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①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8,397	감) 3,977	664,362	

라.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	광양읍 목성리 일원	664,362	○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무상귀속 협의 결과에 따른 제척사항 반영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 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 정	31	6,026	112,269	7	2,429	50,334	8	1,843	30,024	16	1,754	31,911
	변 경	31	6,023	114,597	7	2,429	50,520	10	2,933	59,434	14	661	4,643
광 로	기 정	-	-	-	-	-	-	-	-	-	-	-	-
	변 경	-	-	-	-	-	-	-	-	-	-	-	-
대 로	기 정	4	1,985	52,135	2	895	24,885	-	-	-	2	1,090	27,250
	변 경	4	1,985	54,295	2	895	24,885	2	1,090	29,410	-	-	-
중 로	기 정	7	2,355	44,004	1	786	15,720	5	1,456	26,928	1	113	1,356
	변 경	7	2,355	44,190	1	786	15,906	5	1,456	26,928	1	113	1,356
소 로	기 정	20	1,686	16,130	4	748	9,729	3	387	3,096	13	551	3,305
	변 경	20	1,683	16,112	4	748	9,729	3	387	3,096	13	548	3,287
기 타	기 정	-	-	-	-	-	-	-	-	-	-	-	-
	변 경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6	보조 간선도로	780	대로1-11호	대로1-4호	일반도로	목성지구	'18.6.14	목성 지구
변경	대로	2	1	26~32	보조 간선도로	780	대로1-11호	대로1-4호	일반도로	목성지구	'18.6.14	임시 번호
기정	대로	3	2	26	보조 간선도로	310	중로1-1호	대로1-11호	일반도로	목성지구	'18.6.14	목성 지구
변경	대로	2	2	26~32	보조 간선도로	310	중로1-1호	대로1-11호	일반도로	목성지구	'18.6.14	임시 번호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786	대로1-1호	대로1-1호	일반도로	목성지구	'18.6.14	목성 지구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786	대로1-1호	대로1-1호	일반도로	목성지구	'18.6.14	임시 번호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27	대로3-2호	경관녹지3	보행자 전용도로	목성지구	'18.6.14	목성 지구
변경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24	대로3-2호	경관녹지3	보행자 전용도로	목성지구	'18.6.14	임시 번호

※ 금회 변경된 결정조서 외에 결정조서는 변경없음

■ 도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	대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498-1답 일원 - 폭원 : 26m → 26~32m(변경) - 연장 : 780m(변경없음)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대로 2-2	대로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12-1답 일원 - 폭원 : 26m → 26~32m(변경) - 연장 : 310m(변경없음)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중로 1-1	중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19-1답 일원 - 폭원 : 20m → 20~23m(변경) - 연장 : 786m(변경없음)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 3-12	소로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09-1답 일원 - 폭원 : 6m(변경없음) - 연장 : 227m→224m(변경)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연장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	녹지	완충 녹지	목성리 503-2 일원	2,610	증) 14	2,624	'18.6.14	-
변경	10	녹지	완충 녹지	목성리 518-4 일원	16,894	감) 1,415	15,479	'18.6.14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06-1답 일원 - 면적 : 2,610㎡ → 2,624㎡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증가
10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18-1답 일원 - 면적 : 16,894㎡ → 15,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무상귀속협의 결과에 따른 제척사항 반영 •학교부지 소유저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원을 완충녹지로 변경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공원	근린 공원	목성리 513-15 일원	35,063	감) 2,561	32,502	'18.6.14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13-15 일원 - 면적 : 35,063㎡ → 32,502㎡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 무상귀속협의 결과에 따른 제척사항 반영으로 공원 축소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공공주택용지 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6,406	감)2,343	314,063	-	316,406	감)2,343	314,063	-
-	A1	35,267	-	35,267	목성리 484-6	35,267	-	35,267	
	A2	27,304	-	27,304	목성리 487-15	27,304	-	27,304	
	A3	33,636	-	33,636	목성리 515-7	33,636	-	33,636	
	B1	78,670	감)749	77,921	목성리 495-4	78,670	감)749	77,921	
	B2	31,768	감)370	31,398	목성리 496-8	31,768	감)370	31,398	
	B3	37,101	감)187	36,914	목성리 503-4	37,101	감)187	36,914	
	B4	32,900	감)186	32,714	목성리 509-8	32,900	감)186	32,714	
	B5	39,760	감)851	38,909	목성리 508-13	39,760	감)851	38,909	

■ 공공주택용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B1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495-1답 일원 - 면적 : 78,670㎡ → 77,921㎡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B2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496-2답 일원 - 면적 : 31,768㎡ → 31,398㎡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B3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03-1답 일원 - 면적 : 37,101㎡ → 36,914㎡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B4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209-1답 일원 - 면적 : 32,900㎡ → 32,714㎡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B5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위치 : 목성리 508-3답 일원 - 면적 : 39,760㎡ → 38,909㎡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지형도면은 광양시청 택지과(061-797-31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시 광영동, 옥곡면 신금리 일원의 광영·의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조서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광양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	옥곡면 신금리 일원	546,490.3	감)7,485.8	539,004.5	2012.3.5	2012-54호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545,115.3㎡ → 539,004.5㎡ 감)7,48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영·의암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구역계정형화를 위해 지원시설 용지(F1-1) 및 산업시설용지(E1, E2) 부지를 제척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코자 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6,490.3	감)7,485.8	539,004.5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715.0	-	170,715.0	31.5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890.0	-	114,890.0	21.2	
	준주거지역	105,066.0	-	105,066.0	19.4	
준공업지역		67,770.3	감)7,485.8	60,284.5	11.6	
자연녹지지역		88,049.0	-	88,049.0	16.3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라 구역면적은 감소하나, 용도지역은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합 계		546,490.3	539,00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715.0	170,715.0	2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원시설용지(F1-1) 및 산업시설용지(E1, E2) 제척에 따른 용도 지역은 변경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890.0	114,890.0	220%이하	
	준주거지역	105,066.0	105,066.0	400%이하	
	준공업지역	67,770.3	60,284.5	400%이하	
	자연녹지지역	88,049.0	88,049.0	100%이하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1) 도 로(변경)

①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1	12,145	140,203.3	8	4,147	75,305.2	28	3,994	32,874.3	35	4,004	32,023.8
	변경	71	11,922	138,106.3	8	4,147	75,305.2	28	3,865	31,821.3	35	3,910	30,979.8
중로	기정	15	5,854	97,209.7	4	3,346	67,266.1	2	280	3,940.9	9	2,228	26,002.7
	변경	15	5,760	96,165.7	4	3,346	67,266.1	2	280	3,940.9	9	2,134	24,958.7
소로	기정	56	6,291	42,993.6	4	801	8,039.1	26	3,714	28,933.4	26	1,776	6,021.1
	변경	56	6,162	41,940.6	4	801	8,039.1	26	3,585	27,880.4	26	1,776	6,021.1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136	20	국지 도로	849	중로1-67호	중로1-6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1	137	20	국지 도로	434	중로1-67호	중로1-6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1	66	20	국지 도로	834 (430)	중로1-67호	중로2-67호	일반 도로	전고239호 91.10.12.	()구역내 일부편입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67	20-23	국지 도로	2,631 (1,633)	대로1-22호	중로1-68호	일반 도로	광양47호 02.12.18.	()구역내 일부편입
기정	중로	2	143	15	국지 도로	155	중로1-67호	신금리 1663대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2	144	15	국지 도로	125	중로1-136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1	12	국지 도로	281	중로1-136호	중로2-14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2	12	국지 도로	36	중로1-136호	소로1-23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3	12	국지 도로	844	중로1-136호	중로1-2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4	12	국지 도로	218	중로2-144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5	12	국지 도로	117	중로2-144호	중로3-13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6	12	국지 도로	135	중로1-136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7	12	국지 도로	206	중로3-136호	중로3-138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138	12	국지 도로	297	중로3-137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중로	3	70	12	국지 도로	217 (94)	대로1-22호	중로1-67호	일반 도로	광양47호 02.12.18	
변경	중로	3	70	12	국지 도로	217 (-)	대로1-22호	중로1-67호	일반 도로	-	구역내:L=0m 구역외:L=217m
기정	소로	1	232	10	국지 도로	307	중로3-131호	중로3-1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3	10	국지 도로	88	중로3-131호	소로2-62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4	10	국지 도로	138	중로3-133호	소로2-628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1	235	10	국지 도로	268	중로3-133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4	8	국지 도로	290	중로2-143호	소로1-2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5	8	국지 도로	45	중로3-131호	소로2-62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626	8	국지 도로	137	소로1-233호	소로2-62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7	8	국지 도로	36	중로1-136호	소로1-2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8	8	국지 도로	233	소로1-234호	소로2-6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29	8	국지 도로	199	소로1-234호	소로2-6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0	8	국지 도로	169	소로1-234호	소로2-631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1	8	국지 도로	178	중로1-67호	중로3-13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2	8	국지 도로	50	소로2-631호	소로2-63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3	8	국지 도로	166	소로2-632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4	8	국지 도로	118	소로2-632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5	8	국지 도로	154	소로2-632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6	8	국지 도로	129	중로3-133호	소로3-613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7	8	국지 도로	120	소로2-640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8	8	국지 도로	107	소로2-640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39	8	국지 도로	94	소로2-640호	소로2-63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0	8	국지 도로	128	중로3-133호	소로3-61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1	8	국지 도로	137	소로1-235호	소로2-640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2	8	국지 도로	133	소로2-644호	소로2-640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3	8	국지 도로	128	소로2-644호	소로2-640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4	8	국지 도로	84	소로1-235호	소로3-615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156	소로2-646호	소로2-64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646	8	국지 도로	216	소로1-235호	소로2-644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7	8	국지 도로	35	중로1-137호	소로2-646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8	8	국지 도로	186	중로2-646호	소로2-649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2	649	8	국지 도로	286 (286)	중로1-79호	소로2-648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변경	소로	2	649	8	국지 도로	286 (142)	중로1-79호	소로2-648호	일반 도로	-	구역내L=142m 구역외L=144m
기정	소로	3	598	4	특수 도로	87	중로1-67호	중로2-14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599	4	특수 도로	82	중로2-143호	소로3-60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0	4	특수 도로	388	중로1-66호	소로2-626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1	4	특수 도로	25	소로2-624호	소로3-60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2	4	특수 도로	38	중로1-67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3	4	특수 도로	38	중로1-67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4	4	특수 도로	48	중로3-131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5	4	특수 도로	38	중로1-67호	소로1-23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6	4	특수 도로	36	중로1-67호	소로2-62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7	4	특수 도로	35	중로1-67호	소로2-62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8	4	특수 도로	49	소로2-628호	소로2-6629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09	4	특수 도로	43	소로2-629호	소로2-63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0	4	특수 도로	45	중로3-133호	소로2-630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1	4	특수 도로	45	중로3-133호	소로2-633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2	4	특수 도로	21	소로2-635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613	4	특수 도로	21	소로2-636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4	4	특수 도로	21	소로2-640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5	4	특수 도로	21	소로2-644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6	4	특수 도로	21	소로2-646호	연결녹지115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7	4	특수 도로	35	중로1-137호	소로1-235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8	4	특수 도로	35	중로1-137호	중로3-13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19	4	특수 도로	50	중로1-137호	중로3-138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0	4	특수 도로	36	중로1-136호	중로3-134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1	4	특수 도로	20	중로1-88호	소로3-622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2	4	국지 도로	452	소로3-623호	중로1-67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기정	소로	3	623	4	국지 도로	46	소로3-622호	중로1-67호	일반 도로	전남19호 15.1.29.	

※ ()는 광영·의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70	중로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도로 편입구간 변경 - 구역내 : B=12m, L=94m→0m - 구역외 : B=12m, L=123m→21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도로 편입구간 변경
소로2-649	소로2-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도로 편입구간 변경 - 구역내 : B=8m, L=286m→142m - 구역외 : B=8m, L=0m→14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도로 편입구간 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120.6	-	11,120.6		
기정	171	주차장	옥곡면 신금리 1726차	1,988.7	-	1,988.7	전남19호 15.1.29.	
기정	172	주차장	옥곡면 신금리 1802차	1,296.7	-	1,296.7	전남19호 15.1.29.	
기정	173	주차장	광영동 931차	2,316.3	-	2,316.3	전남19호 15.1.29.	
기정	174	주차장	광영동 877차	1,002.9	-	1,002.9	전남19호 15.1.29.	
기정	175	주차장	광영동 1088차	4,516.0	-	4,516.0	전남19호 15.1.29.	

2) 공간시설

(1) 녹 지(변경)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66,108.4 (37,428.4)	- (감48.1)	66,108.4 (37,380.3)		()는 구역내 편입면적
기정	112	완1	완충 녹지	옥곡면 신금리 1661공 일원	3,296.2	-	3,296.2	전남19호 15.1.29.	
변경	41	완41	완충 녹지	옥곡면 신금리 1628공 일원	36,296.0 (7,616.0)	- (감48.1)	36,296.0 (7,567.9)	전남331호 08.3.27	구역내7,567.9㎡ 구역외28,728.1㎡
기정	113	경1	경관 녹지	옥곡면 신금리 1774공	13,239.6	-	13,239.6	전남19호 15.1.29.	
기정	114	연1	연결 녹지	옥곡면 신금리 1875공	3,539.9	-	3,539.9	전남19호 15.1.29.	
기정	115	연2	연결 녹지	옥곡면 신금리 1993공 일원	9,736.7	-	9,736.7	전남19호 15.1.29.	

②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완충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완충녹지 편입면적 변경 - 기정) 36,296.0㎡[7,616.0㎡] → 변경) 36,296.0㎡[7,567.9㎡], 감)0㎡[감)4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내 완충녹지 편입면적 변경

(2) 공 원(변경없음)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368.4	-	60,368.4		
기정	168	의암1	소공원	옥곡면 신금리 1725공	1,027.0	-	1,027.0	전남19호 15.1.29.	
기정	169	의암2	소공원	옥곡면 신금리 1881공 일원	6,245.1	-	6,245.1	전남19호 15.1.29.	
기정	170	의암3	소공원	광영동 1883공	975.6	-	975.6	전남19호 15.1.29.	
기정	171	의암4	체육 공원	광영동 1089공	52,120.7	-	52,120.7	전남19호 15.1.29.	유수지1과 중복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공공청사	광영동 1087공	9,833.6	-	9,833.6	전남19호 15.1.29.	

4)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

①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유수지	저류 시설	광영동 1087공	4,294.0	-	4,294.0	전남19호 15.1.29.	공원4와 중복결정

5)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①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옥곡면 신금리 1993공	44.0	-	44.0	전남19호 15.1.29.	녹지와 중복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84,647.7	-	-	84,647.7	
A1~ A20	A1	1,541.0	-1	신금리 1724대	282.7	
			-2	신금리 1723대	293.1	
			-3	신금리 1722대	171.0	
			-4	신금리 1721대	261.1	
			-5	신금리 1720대	248.8	
			-6	신금리 1719대	284.3	
	A2	2,643.4	-1	신금리 1743대	236.4	
			-2	신금리 1744대	236.4	
			-3	신금리 1745대	236.4	
			-4	신금리 1746대	224.5	
			-5	신금리 1747대	253.2	
			-6	신금리 1748대	253.2	
			-7	신금리 1749대	301.7	
			-8	신금리 1750대	182.6	
			-9	신금리 1751대	430.2	
			-10	신금리 1752대	288.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A1~ A20	A3	3,103.2	-1	신금리 1764대	231.8	
			-2	신금리 1763대	262.0	
			-3	신금리 1762대	262.0	
			-4	신금리 1761대	299.7	
			-5	신금리 1760대	243.1	
			-6	신금리 1759대	243.2	
			-7	신금리 1758대	244.3	
			-8	신금리 1757대	297.7	
			-9	신금리 1756대	268.6	
			-10	신금리 1755대	212.2	
			-11	신금리 1754대	305.4	
			-12	신금리 1753대	233.2	
	A4	3,344.1	-1	신금리 1740대	344.1	
			-2	신금리 1739대	344.1	
			-3	신금리 1738대	332.5	
			-4	신금리 1737대	197.5	
			-5	신금리 1736대	211.7	
			-6	신금리 1735대	239.7	
			-7	신금리 1734대	232.7	
			-8	신금리 1733대	237.8	
			-9	신금리 1732대	247.4	
			-10	신금리 1731대	206.7	
			-11	신금리 1730대	236.5	
			-12	신금리 1729대	256.7	
	A5	4,884.0	-1	신금리 1872대	285.5	
			-2	신금리 1871대	285.4	
			-3	신금리 1870대	407.1	
			-4	신금리 1869대	243.6	
			-5	신금리 1868대	348.5	
			-6	신금리 1867대	306.9	
			-7	신금리 1866대	297.0	
			-8	신금리 1865대	267.6	
			-9	신금리 1864대	198.1	
			-10	신금리 1863대	198.0	
			-11	신금리 1862대	241.6	
			-12	신금리 1861대	232.6	
			-13	신금리 1860대	356.6	
			-14	신금리 1858대	221.6	
			-15	신금리 1857대	199.2	
-16	신금리 1856대	199.0				
-17	신금리 1855대	334.8				
-18	신금리 1854대	260.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A1~ A20	A6	5,948.6	-1	신금리 1852대	236.6		
			-2	신금리 1851대	264.6		
			-3	신금리 1850대	194.4		
			-4	신금리 1849대	170.3		
			-5	신금리 1848대	233.3		
			-6	신금리 1847대	353.1		
			-7	신금리 1846대	249.5		
			-8	신금리 1845대	217.3		
			-9	신금리 1844대	151.9		
			-10	신금리 1843대	157.0		
			-11	신금리 1842대	245.7		
			-12	신금리 1841대	254.6		
			-13	신금리 1840대	254.7		
			-14	신금리 1839대	224.3		
			-15	신금리 1838대	209.2		
			-16	신금리 1837대	259.5		
			-17	신금리 1836대	269.2		
			-18	신금리 1835대	250.0		
			-19	신금리 1834대	319.2		
			-20	신금리 1832대	303.8		
			-21	신금리 1831대	189.3		
			-22	신금리 1830대	223.3		
			-23	신금리 1829대	223.3		
			-24	신금리 1828대	204.8		
			-25	신금리 1827대	289.7		
		A7	6,908.6	-1	신금리 1825대	344.8	
				-2	신금리 1824대	323.8	
				-3	신금리 1823대	258.9	
				-4	신금리 1822대	420.6	
				-5	신금리 1821대	471.9	
				-6	신금리 1820대	388.0	
				-7	신금리 1819대	392.9	
				-8	신금리 1818대	203.1	
				-9	신금리 1817대	313.0	
				-10	신금리 1816대	305.3	
				-11	신금리 1815대	285.9	
				-12	신금리 1814대	272.9	
				-13	신금리 1813대	272.9	
				-14	신금리 1812대	330.0	
				-15	신금리 1811대	282.7	
				-16	신금리 1810대	394.3	
				-17	신금리 1809대	263.7	
		-18	신금리 1807대	290.4			
		-19	신금리 1806대	257.4			
	-20	신금리 1805대	312.9				
	-21	신금리 1804대	229.9				
	-22	신금리 1803대	293.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A1~ A20	A8	4,160.4	-1	신금리 1885대	256.0	
			-2	신금리 1901대	255.9	
			-3	신금리 1900대	258.0	
			-4	신금리 1899대	242.3	
			-5	신금리 1898대	234.9	
			-6	신금리 1897대	363.2	
			-7	신금리 1896대	232.6	
			-8	신금리 1895대	232.6	
			-9	신금리 1894대	200.9	
			-10	신금리 1893대	212.6	
			-11	신금리 1892대	261.0	
			-12	신금리 1891대	191.2	
			-13	신금리 1890대	229.5	
			-14	신금리 1889대	282.5	
			-15	신금리 1888대	255.9	
			-16	신금리 1887대	225.6	
			-17	신금리 1886대	225.7	
	A9	3,803.1	-1	신금리 1903대	189.4	
			-2	신금리 1916대	318.7	
			-3	신금리 1915대	407.0	
			-4	신금리 1914대	238.6	
			-5	신금리 1913대	269.5	
			-6	신금리 1912대	212.5	
			-7	신금리 1911대	265.9	
			-8	신금리 1910대	302.3	
			-9	신금리 1909대	302.3	
			-10	신금리 1908대	150.0	
			-11	신금리 1907대	261.1	
			-12	신금리 1906대	252.3	
			-13	신금리 1905대	316.7	
			-14	신금리 1904대	316.8	
	A10	3,595.6	-1	신금리 1918대	211.8	
			-2	신금리 1929대	207.1	
			-3	신금리 1928대	327.2	
			-4	신금리 1927대	297.7	
			-5	신금리 1926대	372.1	
			-6	신금리 1925대	372.1	
			-7	신금리 1924대	319.6	
			-8	신금리 1923대	240.3	
-9			신금리 1922대	200.0		
-10			신금리 1921대	350.6		
-11			신금리 1920대	347.9		
-12			신금리 1919대	349.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A1~ A20	A11	7,463.4	-1	신금리 1932대	309.8	
			-2	신금리 1933대	258.5	
			-3	신금리 1934대	258.4	
			-4	신금리 1935대	258.4	
			-5	신금리 1936대	258.5	
			-6	신금리 1937대	205.2	
			-7	신금리 1938대	281.5	
			-8	신금리 1986대	243.1	
			-9	신금리 1987대	243.1	
			-10	신금리 1988대	243.1	
			-11	신금리 1989대	243.1	
			-12	신금리 1990대	243.4	
			-13	신금리 1991대	243.4	
			-14	광영동 849대	259.9	
			-15	광영동 850대	260.0	
			-16	광영동 851대	260.0	
			-17	광영동 852대	260.0	
			-18	광영동 853대	260.0	
			-19	광영동 854대	260.0	
			-20	광영동 855대	257.9	
			-21	광영동 856대	260.1	
			-22	광영동 1066대	258.0	
			-23	광영동 1067대	257.9	
			-24	광영동 1068대	263.0	
	-25	광영동 1069대	263.5			
	-26	광영동 1070대	263.4			
	-27	광영동 1071대	263.4			
	-28	광영동 1072대	263.4			
	-29	광영동 1073대	263.4			
	A12	3,987.3	-1	신금리 1941대	374.4	
-2			신금리 1955대	274.5		
-3			신금리 1954대	256.0		
-4			신금리 1953대	255.5		
-5			신금리 1952대	317.2		
-6			신금리 1951대	277.7		
-7			신금리 1950대	277.7		
-8			신금리 1949대	277.5		
-9			신금리 1948대	250.0		
-10			신금리 1947대	245.9		
-11			신금리 1946대	183.5		
-12			신금리 1945대	355.8		
-13			신금리 1944대	202.7		
-14			신금리 1943대	202.6		
-15			신금리 1942대	236.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A1~ A20	A13	3,553.1	-1	신금리 1957대	230.6	
			-2	신금리 1969대	230.6	
			-3	신금리 1968대	230.6	
			-4	신금리 1967대	256.6	
			-5	신금리 1966대	229.1	
			-6	신금리 1965대	200.3	
			-7	신금리 1964대	399.0	
			-8	신금리 1963대	372.5	
			-9	신금리 1962대	403.3	
			-10	신금리 1961대	250.0	
			-11	신금리 1960대	256.6	
			-12	신금리 1959대	256.8	
			-13	신금리 1958대	237.1	
	A14	3,104.6	-1	신금리 1971대	366.0	
			-2	신금리 1983대	260.4	
			-3	신금리 1982대	200.0	
			-4	신금리 1981대	200.0	
			-5	신금리 1980대	200.0	
			-6	신금리 1979대	325.8	
			-7	신금리 1978대	201.0	
			-8	신금리 1977대	201.0	
			-9	신금리 1976대	165.0	
			-10	신금리 1975대	173.9	
			-11	신금리 1974대	243.8	
			-12	신금리 1973대	234.7	
			-13	신금리 1972대	333.0	
	A15	3,428.5	-1	광영동 905대	243.6	
			-2	광영동 904대	295.1	
			-3	광영동 903대	210.9	
			-4	광영동 902대	180.0	
			-5	광영동 901대	212.2	
			-6	광영동 900대	277.6	
			-7	광영동 899대	307.2	
			-8	광영동 898대	270.4	
			-9	광영동 897대	294.2	
			-10	광영동 896대	211.2	
			-11	광영동 895대	179.2	
			-12	광영동 894대	210.2	
			-13	광영동 893대	232.5	
-14	광영동 892대	304.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A1~ A20	A16	3,292.2	-1	광영동 889대	250.0	
			-2	광영동 888대	275.4	
			-3	광영동 887대	275.3	
			-4	광영동 886대	275.3	
			-5	광영동 885대	277.0	
			-6	광영동 884대	291.2	
			-7	광영동 883대	276.7	
			-8	광영동 882대	280.8	
			-9	광영동 881대	279.2	
			-10	광영동 880대	279.1	
			-11	광영동 879대	279.3	
			-12	광영동 878대	252.9	
	A17	4,122.2	-1	광영동 859대	258.0	
			-2	광영동 875대	263.5	
			-3	광영동 874대	224.5	
			-4	광영동 873대	210.9	
			-5	광영동 872대	190.5	
			-6	광영동 871대	294.7	
			-7	광영동 870대	300.2	
			-8	광영동 869대	318.5	
			-9	광영동 868대	305.0	
			-10	광영동 867대	305.0	
			-11	광영동 866대	165.0	
			-12	광영동 865대	164.9	
			-13	광영동 864대	162.7	
			-14	광영동 863대	214.3	
			-15	광영동 862대	228.4	
			-16	광영동 861대	267.7	
			-17	광영동 860대	248.4	
	A18	5,943.4	-1	광영동 1020대	202.2	
			-2	광영동 1019대	283.6	
			-3	광영동 1018대	196.7	
			-4	광영동 1017대	296.9	
			-5	광영동 1016대	295.7	
			-6	광영동 1015대	224.2	
			-7	광영동 1014대	224.2	
-8			광영동 1013대	215.0		
-9			광영동 1012대	202.0		
-10			광영동 1011대	287.3		
-11			광영동 1010대	286.3		
-12			광영동 1009대	259.2		
-13			광영동 1008대	260.2		
-14			광영동 1007대	286.6		
-15			광영동 1006대	287.2		
-16			광영동 1005대	201.7		
-17			광영동 1004대	216.2		
-18	광영동 1003대	227.0				
-19	광영동 1002대	222.8				
-20	광영동 1001대	296.4				
-21	광영동 1000대	297.6				
-22	광영동 999대	192.6				
-23	광영동 998대	206.7				
-24	광영동 997대	27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A1~ A20	A19	5,218.2	-1	광영동 1022대	271.8	
			-2	광영동 1045대	177.3	
			-3	광영동 1044대	215.0	
			-4	광영동 1043대	214.7	
			-5	광영동 1042대	231.5	
			-6	광영동 1041대	231.5	
			-7	광영동 1040대	231.6	
			-8	광영동 1039대	200.1	
			-9	광영동 1038대	180.6	
			-10	광영동 1037대	180.6	
			-11	광영동 1036대	244.6	
			-12	광영동 1035대	222.4	
			-13	광영동 1034대	254.1	
			-14	광영동 1033대	254.0	
			-15	광영동 1032대	181.2	
			-16	광영동 1031대	170.0	
			-17	광영동 1030대	177.3	
			-18	광영동 1029대	233.7	
			-19	광영동 1028대	223.4	
			-20	광영동 1027대	228.5	
			-21	광영동 1026대	220.5	
			-22	광영동 1025대	221.5	
			-23	광영동 1024대	221.9	
			-24	광영동 1023대	230.4	
	A20	4,602.8	-1	광영동 1048대	301.3	
			-2	광영동 1064대	301.3	
			-3	광영동 1063대	231.6	
			-4	광영동 1062대	174.8	
			-5	광영동 1061대	195.5	
			-6	광영동 1060대	233.2	
			-7	광영동 1059대	287.6	
			-8	광영동 1058대	283.2	
			-9	광영동 1057대	292.7	
			-10	광영동 1056대	300.4	
			-11	광영동 1055대	281.4	
			-12	광영동 1054대	286.1	
			-13	광영동 1053대	228.0	
			-14	광영동 1052대	301.4	
-15	광영동 1051대	290.9				
-16	광영동 1050대	306.0				
-17	광영동 1049대	307.4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109,509.8	-	109,509.8	
B1	소계	13,480.0	-	13,480.0	
	B1	3,857.8	신금리 1718대	3,857.8	
B3	B2	4,496.8	신금리 1773대	4,496.8	
	B3	5,125.4	신금리 1874대	5,125.4	
C1	소계	96,029.8	-	96,029.8	
	C1	51,611.6	신금리 1663대	51,611.6	
C2	C2	44,418.2	신금리 1876대	44,418.2	

3) 준주거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59,018.9	-	-	59,018.9	
D1~ D16	D1	3,661.3	-1	신금리 1665대	3,661.3	
	D2	6,549.6	-1	신금리 1670대	376.0	
			-2	신금리 1669대	278.8	
			-3	신금리 1668대	279.7	
			-4	신금리 1667대	359.8	
			-5	신금리 1672대	286.0	
			-6	신금리 1673대	378.1	
			-7	신금리 1674대	446.7	
			-8	신금리 1675대	305.5	
			-9	신금리 1676대	305.5	
			-10	신금리 1677대	324.4	
			-11	신금리 1679대	575.8	
			-12	신금리 1680대	297.5	
			-13	신금리 1681대	459.3	
			-14	신금리 1682대	447.7	
			-15	신금리 1683대	335.0	
			-16	신금리 1711대	290.0	
			-17	신금리 1712대	288.8	
	-18	신금리 1713대	255.0			
-19	신금리 1714대	260.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D1~ D16	D3	7,276.7	-1	신금리 1710대	319.1		
			-2	신금리 1709대	280.3		
			-3	신금리 1708대	287.2		
			-4	신금리 1707대	308.7		
			-5	신금리 1706대	307.5		
			-6	신금리 1705대	318.2		
			-7	신금리 1704대	336.4		
			-8	신금리 1703대	301.3		
			-9	신금리 1702대	256.4		
			-10	신금리 1701대	267.0		
			-11	신금리 1700대	379.4		
			-12	신금리 1699대	287.0		
			-13	신금리 1698대	269.2		
			-14	신금리 1697대	319.5		
			-15	신금리 1696대	267.8		
			-16	신금리 1695대	296.4		
			-17	신금리 1694대	376.6		
			-18	신금리 1693대	280.0		
			-19	신금리 1691대	320.9		
			-20	신금리 1690대	449.0		
			-21	신금리 1689대	280.1		
			-22	신금리 1688대	250.0		
			-23	신금리 1687대	264.8		
			-24	신금리 1686대	253.9		
		D4	1,547.5	-1	신금리 1771대	314.9	
				-2	신금리 1770대	280.7	
				-3	신금리 1769대	300.7	
				-4	신금리 1768대	339.4	
				-5	신금리 1767대	311.8	
		D5	1,531.6	-1	신금리 1784대	380.0	
				-2	신금리 1783대	452.1	
				-3	신금리 1782대	370.9	
				-4	신금리 1781대	328.6	
	D6	1,150.0	-1	신금리 1779대	286.8		
			-2	신금리 1778대	266.0		
			-3	신금리 1777대	251.0		
			-4	신금리 1776대	346.2		
	D7	4,370.0	-1	신금리 1787대	357.4		
			-2	신금리 1788대	364.1		
			-3	신금리 1789대	373.8		
			-4	신금리 1790대	249.6		
			-5	신금리 1791대	271.6		
			-6	신금리 1792대	279.5		
			-7	신금리 1793대	283.9		
			-8	신금리 1795대	384.7		
			-9	신금리 1796대	283.5		
			-10	신금리 1797대	450.5		
			-11	신금리 1798대	372.5		
			-12	신금리 1799대	268.5		
			-13	신금리 1800대	430.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D1~ D16	D8	3,552.4	-1	광영동 919대	287.4	
			-2	광영동 929대	351.6	
			-3	광영동 928대	381.3	
			-4	광영동 927대	374.9	
			-5	광영동 926대	379.3	
			-6	광영동 925대	349.4	
			-7	광영동 924대	250.1	
			-8	광영동 923대	250.1	
			-9	광영동 922대	331.5	
			-10	광영동 921대	343.0	
			-11	광영동 920대	253.8	
	D9	3,392.0	-1	광영동 907대	304.7	
			-2	광영동 917대	304.5	
			-3	광영동 916대	440.9	
			-4	광영동 915대	299.7	
			-5	광영동 914대	347.0	
			-6	광영동 913대	253.8	
			-7	광영동 912대	253.7	
			-8	광영동 911대	319.9	
			-9	광영동 910대	316.7	
			-10	광영동 909대	275.6	
			-11	광영동 908대	275.5	
	D10	2,344.8	-1	광영동 934대	459.2	
			-2	광영동 935대	368.9	
			-3	광영동 936대	369.0	
			-4	광영동 937대	362.0	
			-5	광영동 938대	361.9	
			-6	광영동 939대	423.8	
	D11	9,468.9	-1	광영동 977대	329.7	
			-2	광영동 978대	329.7	
			-3	광영동 979대	2,745.9	
			-4	광영동 980대	530.6	
			-5	광영동 981대	530.7	
			-6	광영동 982대	530.7	
			-7	광영동 983대	449.9	
			-8	광영동 985대	485.0	
			-9	광영동 986대	518.0	
			-10	광영동 987대	351.3	
			-11	광영동 988대	436.4	
			-12	광영동 989대	398.3	
			-13	광영동 990대	398.3	
	-14	광영동 991대	537.3			
	-15	광영동 993대	336.1			
	-16	광영동 994대	280.5			
	-17	광영동 995대	280.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D1~ D16	D12	4,032.7	-1	광영동 976대	422.4	
			-2	광영동 975대	459.0	
			-3	광영동 974대	292.3	
			-4	광영동 973대	275.8	
			-5	광영동 972대	286.3	
			-6	광영동 971대	249.9	
			-7	광영동 970대	316.7	
			-8	광영동 969대	471.5	
			-9	광영동 968대	249.7	
			-10	광영동 967대	270.2	
			-11	광영동 966대	270.1	
			-12	광영동 965대	468.8	
	D13	7,679.2	-1	광영동 941대	293.6	
			-2	광영동 943대	338.1	
			-3	광영동 962대	337.8	
			-4	광영동 961대	343.1	
			-5	광영동 960대	343.1	
			-6	광영동 959대	343.2	
			-7	광영동 958대	343.3	
			-8	광영동 957대	288.7	
			-9	광영동 956대	288.7	
			-10	광영동 955대	288.7	
			-11	광영동 954대	315.9	
			-12	광영동 953대	316.0	
			-13	광영동 952대	599.8	
			-14	광영동 951대	457.9	
			-15	광영동 950대	269.6	
			-16	광영동 949대	253.4	
			-17	광영동 948대	255.5	
			-18	광영동 947대	254.9	
			-19	광영동 946대	311.2	
			-20	광영동 945대	418.1	
			-21	광영동 944대	307.3	
-22			광영동 943대	306.3		
-23			광영동 942대	405.0		
D14	676.3	-1	광영동 1084대	359.7		
		-2	광영동 1083대	316.6		
D15	704.1	-1	광영동 1081대	299.6		
		-2	광영동 1080대	404.5		
D16	1,081.8	-1	광영동 1078대	301.3		
		-2	광영동 1077대	280.2		
		-3	광영동 1076대	250.0		
		-4	광영동 1075대	250.3		

4) 산업시설용지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번호	위 치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3,883.2	-	-	-	3,883.2				-
E1~ E2	E1	2,302.1	-	-1	신금리 1611장	243.8	-1	신금리 1611장	-	
				-2	신금리 1612장	602.1	-2	신금리 1612장	-	
				-3	신금리 1613장	1,456.2	-3	신금리 1613장	-	
	E2	1,581.1	-	-1	신금리 1653장	509.6	-1	신금리 1653장	-	
				-2	신금리 1654장	737.6	-2	신금리 1654장	-	
				-3	신금리 1655장	333.9	-3	신금리 1655장	-	

5) 지원시설용지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번호	위 치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29,384.9	28,009.9	-	-	29,384.9	-	-	28,009.9	
F1~ F6	F1	1,375.0	-	-1	신금리 1617대	1,375.0	-1	신금리 1617대	-	
	F2	3,244.8	3,244.8	-1	신금리 1618대	1,118.8	-1	신금리 1618대	1,118.8	
				-2	신금리 1619대	1,060.0	-2	신금리 1619대	1,060.0	
				-3	신금리 1620대	1,066.0	-3	신금리 1620대	1,066.0	
	F3	6,971.0	6,971.0	-1	신금리 1623대	1,357.0	-1	신금리 1623대	1,357.0	
				-2	신금리 1624대	1,507.0	-2	신금리 1624대	1,507.0	
				-3	신금리 1625대	1,821.0	-3	신금리 1625대	1,821.0	
				-4	신금리 1627대	2,286.0	-4	신금리 1627대	2,286.0	
	F4	11,029.6	11,029.6	-1	신금리 1632대	887.7	-1	신금리 1632대	887.7	
				-2	신금리 1633대	867.2	-2	신금리 1633대	867.2	
				-3	신금리 1634대	1,010.0	-3	신금리 1634대	1,010.0	
				-4	신금리 1635대	1,006.9	-4	신금리 1635대	1,006.9	
				-5	신금리 1636대	887.4	-5	신금리 1636대	887.4	
				-6	신금리 1637대	937.0	-6	신금리 1637대	937.0	
				-7	신금리 1638대	887.4	-7	신금리 1638대	887.4	
				-8	신금리 1639대	1,019.3	-8	신금리 1639대	1,019.3	
				-9	신금리 1640대	877.8	-9	신금리 1640대	877.8	
				-10	신금리 1641대	888.4	-10	신금리 1641대	888.4	
				-11	신금리 1642대	800.0	-11	신금리 1642대	800.0	
				-12	신금리 1643대	960.5	-12	신금리 1643대	960.5	
	F5	5,185.5	5,185.5	-1	신금리 1645대	868.8	-1	신금리 1645대	868.8	
-2				신금리 1646대	1,529.1	-2	신금리 1646대	1,529.1		
-3				신금리 1647대	1,090.6	-3	신금리 1647대	1,090.6		
-4				신금리 1648대	1,697.0	-4	신금리 1648대	1,697.0		
F6	1,579.0	1,579.0	-1	신금리 1649대	1,579.0	-1	신금리 1649대	1,579.0		

6)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1,120.6	-		11,120.6	
G1~ G5	G1	1,988.7	-1	옥곡면 신금리 1726차	1,988.7	
	G2	1,296.7	-2	옥곡면 신금리 1802차	1,296.7	
	G3	2,316.3	-3	광영동 931차	2,316.3	
	G4	1,002.9	-4	광영동 877차	1,002.9	
	G5	4,516.0	-5	광영동 1088차	4,516.0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9,833.6	-		9,833.6	
H1	H1	9,833.6	-1	광영동 1087공	9,833.6	

8) 어린이집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009	-		1,009	
II	II	1,009	-1	옥곡면 신금리 1660대	1,009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0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 판매사, 고시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은 1층에 한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은 주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중 자목의 학원, 직업훈련소, 독서실은 사용불가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200%이하(제2종일반주거)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공공공간 조성 • 중로(국지도로)와 접해 있는 필지에는 건축한계선 1m 설정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 층수 및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적용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차양막을 설치하며, 2층과 3층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랜트 박스 또는 발코니 설치를 권장 - 목재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외장은 돌출되지 않는 색과 재료를 사용 • 지붕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도로변을 경사지붕으로 계획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고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 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 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0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권장. - 담장재료는 투시형 또는 관목류 등의 생울타리로 권장. -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생울타리로 차폐를 권장하며, 알코브를 설치하여 가로경관의 변화감 부여. ●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녹음을 잘 받아들여 주택의 색과 어울리는 밝고 편안한 감각적인 생활을 만드는 색채 계획 · 보조색 톤의 소재색을 사용하여 주조를 이루도록 배색할 수도 있도록 함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톤배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단, 소재색을 사용할 경우 제시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지붕색은 저명도저도의 회갈색으로 통일함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연간판, 선전 탑, 아취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교통시설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음 · 기타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관계획 보고서’ 기준을 준용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D1~ D16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제외)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 되는 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점가의 간선가로변에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보행자도로 및 필지단변의 건축선으로부터 1m를 이격하여 배치토록 건축한계선을 계획하여 전면공지 조성 유도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차양막을 설치하며, 2층과 3층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화분을 설치 할 수 있는 플랜트 박스 또는 발코니 설치를 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D1~ D16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도로변을 경사지붕으로 계획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 권장 ● 담장,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권장. - 담장재료는 투시형 또는 관목류 등의 생울타리로 권장. ●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녹음을 잘 받아들여 주택의 색과 어울리는 밝고 편안한 감각적인 생활을 만드는 색채 계획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톤배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단, 소재색을 사용할 경우 제시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지붕색은 저명도·저채도의 회갈색으로 통일함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현수막,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공연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교통시설 광고물은 설치 할 수 없음 · 기타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관계획 보고서’ 기준을 준용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1) 연립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1-B3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타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180% 이하(제2종일반주거)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각각부에 공공조경 설치 • 담장 및 울타리는 높이 1.2m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호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조형적인 옥탑디자인 및 지붕 등 특징적 디자인 적용 가능 • 동의 길이 : 6호연립 이내로 권장하며, 6호연립 초과일 경우 저층부(1개층 이상)에 필로티구조의 통로 설치 •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간판)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평지붕 설치시는 옥상녹화토록 함 • 건축물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색채는 무채색 계열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주조색은 채도 4미만, 보조색은 채도 6내외 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 연립주택용지 외부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건축한계선 지정 • 연립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지정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2) 아파트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제3종일반주거)
		용적률		220% 이하(제3종일반주거)
		높이		20층 이하(평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동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 직각 배치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개 구부면이 기울기 $\pm 22.5^\circ$ 범위내로 배치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기울기 $\pm 22.5^\circ$ 범위내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통경선, 단지경관 및 시각적, 심리적인 중압감을 갖지 않도록 한동의 길이는 6호연립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각 1개동당 주동내 층고 차이는 3개층 이하로 설치 •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하되,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함하며,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도모 -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 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등을 도입하며,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실시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 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됨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색채,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색은 각 권역별 제시색으로 통일함 · 보조색은 권역별 제시된 색채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채도이하의 색을 사용 · 강조색은 중채도 이상의 색채 사용도 가능하나, 고채도 색은 피하도록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제3종일반주거)	
		용적률	220% 이하(제3종일반주거)	
		높 이	22층 이하(평균)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주동배치는 가능한 남향배치 권장 • 직각 배치구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 또는 주개 구부면이 기울기 $\pm 22.5^\circ$ 범위내로 배치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기울기 $\pm 22.5^\circ$ 범위내로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동의 길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통경선, 단지경관 및 시각적, 심리적인 중압감을 갖지 않도록 한동의 길이는 6호연립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각 1개동당 주동내 층고 차이는 3개층 이하로 설치 •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하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는 예외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공동주택의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함하며,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출을 도모 -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린상가는 옥상에 적치 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 등을 도입하며,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 실시 • 담장,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울타리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을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 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됨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색채,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색은 각 권역별 제시색으로 통일함 · 보조색은 권역별 제시된 색채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채도이하의 색을 사용 · 강조색은 중채도 이상의 색채 사용도 가능하나, 고채도 색은 피하도록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4) 산업시설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E1~ E2	-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허용용도 중 공장, 창고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선	-	

5) 지원시설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F1~ F6	F2~ F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가로에 접한 획지들은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비슷한 규모로 분할 획지형태는 내부도로의 활용 및 차량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가급적 정형화하도록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셔터 사용 <table border="1" data-bbox="560 1305 1423 1458"> <tr> <td>투시형 벽면</td> <td>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td> </tr> <tr> <td>투시형 셔터</td> <td>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td> </tr> </table>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구조물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장 지구단위계획 디자인지침에 따름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의 이미지를 반영한 색채, 재료를 개별광고물에 30%이상 사용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외관에 꽃 또는 꽃의 이미지를 도입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변의 건축 외관형태는 창문 등의 개구부에 플랜트 박스 설치 						

6)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제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정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체육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경관부문 시행 지침의 기준을 따름 • 담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7)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공원
-	G1~G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4항 및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9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에 한함 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의 20% 미만으로 함 ※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 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만으로 함 - 건축법 시행령 별 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 용도 제외), 판매 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 기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 4항 및 「광양시 주차장조례」 제9조의3제1항 규정에 의 한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 한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근린공공시설)에 한함. 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주차장으로 사 용되는 면적과 주차 장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의 20% 미만으로 함 ※공연장, 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골프연 습장, 근린 공공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높이	1층 이하				

8) 어린이집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E1~E2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의 단독주택(가정어린이집 포함) - 제11호의 아동 관련시설 및 부속용도에 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0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1m)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성하도록 하고,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 - 건축한계선 1m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재공간 또는 화분 으로 조성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포장 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의 포트를 일정간격으로 배치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및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차량의 출입구 폭원은 최소 4m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광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따름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함. 이 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하며, ·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 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 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함.(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2)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A1~ A20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1m)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은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울타리를 주거지측에 조성하도록 하고,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 1m에는 교목 또는 관목(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및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차량의 출입구 폭원은 최소 4m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광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따름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원칙으로 함.(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3)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1~C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경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경구간이 지정된 곳은 일체의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으며(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은 설치 가능),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교목을 위주로 하고 휴식시 설과 관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 · 통경구간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의 보행체계와 연계하여야 함 -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는 교목식재, 관목(초화류)식재, 휴식공간(앉음벽 등)으로 이용하게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함. 바닥은 꽃무늬 등의 포장을 조성하여 상징성 도모 -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지정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2m 이상의 산책로, 교목과 관목 등에 의한 녹지조성, 휴게 및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Flower Gallery, 웰빙코스로서 활용 · 경계부에 조성되는 산책로는 자연스러운 곡선형으로 조성하고 커뮤니티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단지과 연계하여 조성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1~C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 ·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4m떨어진 거리의 1.5m높이 연직면이 8x이상의 조 도로 계획 · 광원을 낮게하여 보행로 바닥면의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 색온도가 낮은 광원사용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분위기 연출 · 기타 건축물 색채 및 야간경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경관계획 보고서’ 기준을 준용함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및 주차 -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내에 설치를 불허함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지침도에 위치 조정 폭이 명시된 블록에 한해 10m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되 진출입구 위치 조정시 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주변도로 상황 또는 인접블록의 진출입구를 고려하여 계획 -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 - 보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의 교차구간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의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 -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광양시 주차장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광양시 주차장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 · 지상주차 이외에는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는 지하주차장 60%이상, 지상주차장 40%이하를 기준으로 계획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 보장치 설치)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권장

4) 지원시설용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	F1~ F6	F2~ F6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3-F6(간선가로변)의 보행자도로변 건축한계선 1m 구간은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 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 - 아울러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하며,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을 높이고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 하도록 권장 - F3~F6(간선가로변)의 도로변 건축한계선 1m에 의해 조성되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 트를 미관을 고려한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진출입 및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음 · 차량의 진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4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대지내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5)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에는 녹음교목을 열식하고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공 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 - 식재수종은 도로변 가로수와 가급적 통일시키거나 녹음이 풍부한 수종으로 하며, 도로를 이 용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Flower Gallery 등) - 보행성, 녹음성 등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담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담장 설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 하되,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H1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동선 및 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 - 주차장 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 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 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이때 대지경 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 조로 조성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 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 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 주차장 진입도로 설치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광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함 · 추후 도로개설 및 공공청사의 개방감 및 보행통행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14m확보(도면 제시)-추후도로개설확보

광양시 공고 제2022-194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 2. 9.

광 양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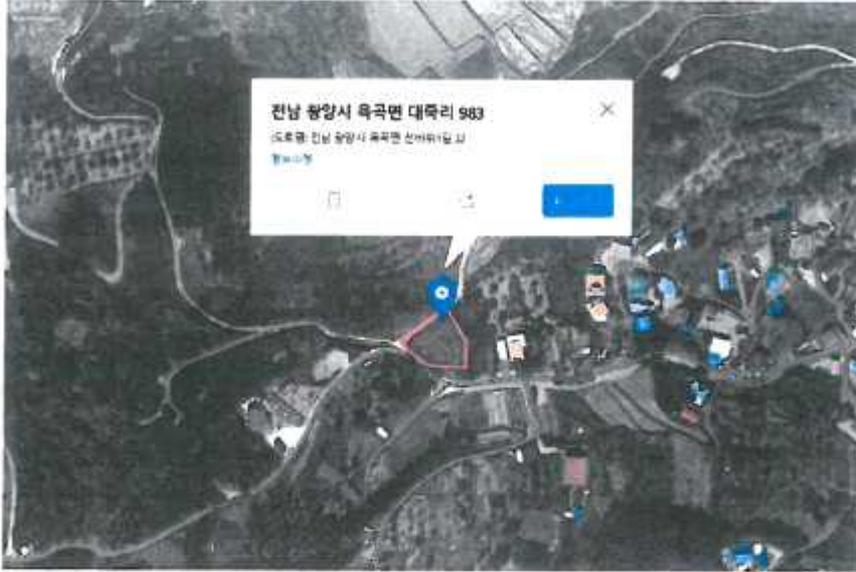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2. 2. 9. ~ 2022. 2. 23.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983번지	이수연	2.0m	3.0m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983번지	1.0m ²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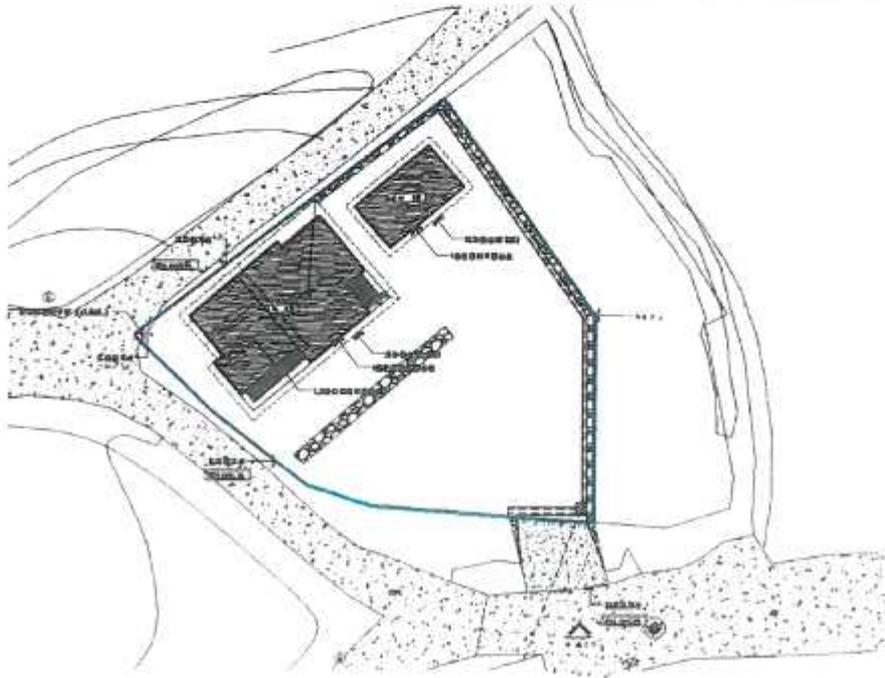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적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저곡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의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2-215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저곡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광 양 시 장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저곡 소하천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	1,860	-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7개소	'21.12.	'24.3.	재해 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소하천종합계획에 홍수 시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폭 확장에 따른 통수능 확보하여 침수예방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1,860m,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7개소 등
- 총사업비 : 7,015백만원

다. 소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봉당리 일원

3.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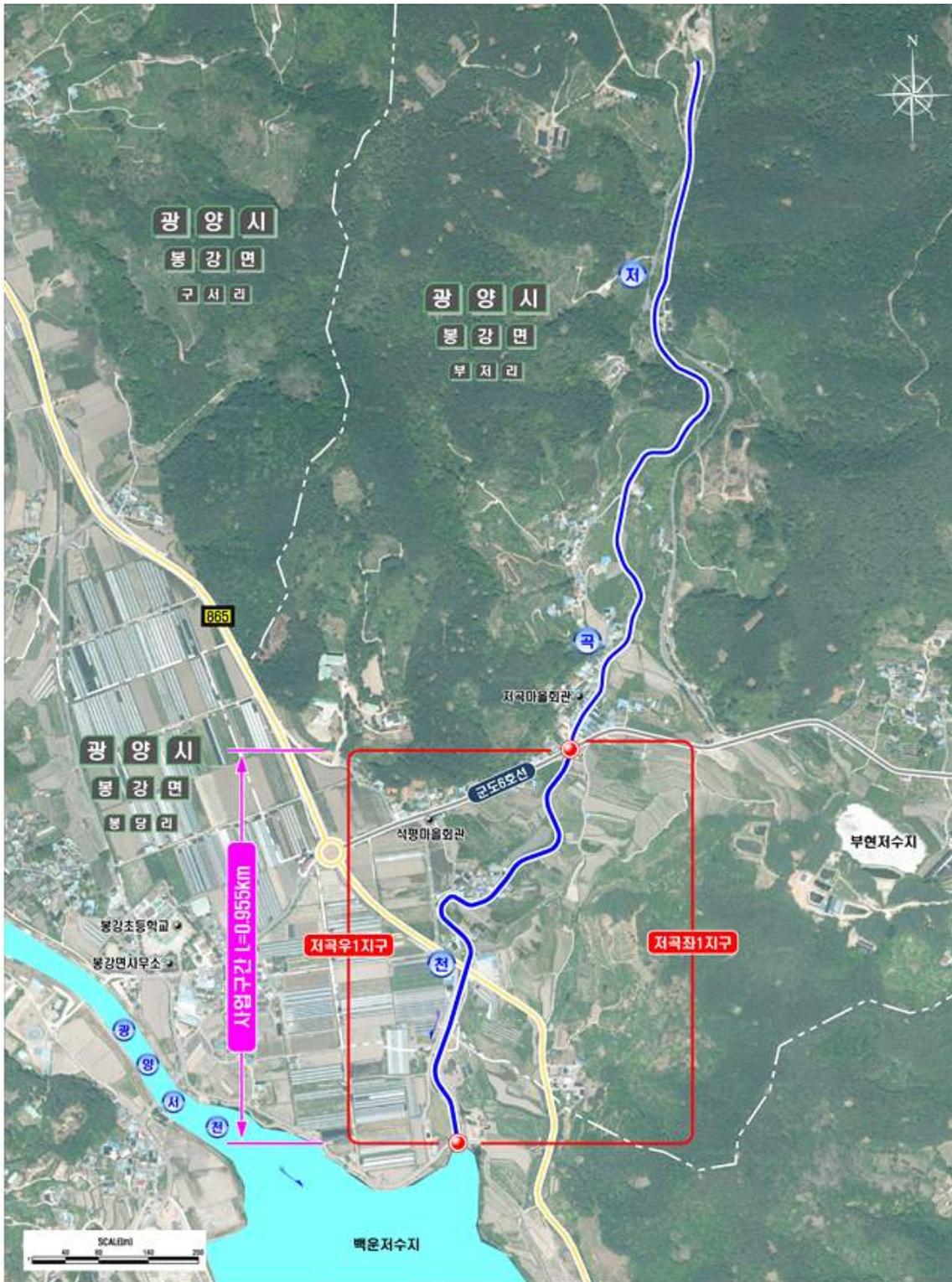
- 시행자 : 전라남도 광양시장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4.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1. 12. ~ 2024. 3.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6.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7. 실시설계도서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비치

8. 예정 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9.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단위: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7,015	500	1,910	3,600	1,005
시 비	7,015	500	1,910	3,600	1,005

10.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광양시장(안전총괄과장)

11. 발생 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 없음

12.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13.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4.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61-797-3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내역 1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0-4	답	208	2		광양시
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0-5	답	25	2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24, 씨동 ***호 (태양아파트)	이*주
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1	잡	41	12		국(기획재정부)
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7	답	38	3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24, 씨동 ***호 (태양아파트)	이*주
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6	답	113	1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9-24, 씨동 ***호 (태양아파트)	이*주
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5	답	36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8길, 3층 ***호(아현동,목화빌라)	이*준
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4-4	답	472	47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62-2 매화마을주공 아파트 103-***	김*호
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2	도	1,149	323		국(건설부)
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6-3	답	94	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6길 ***(연희동, 2층)	허*평
1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3-1	답	32	32		광양시
1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3	답	285	285	***	김*배
1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7-3	답	89	89	경기도 남양주 시늬을3로 88-12, 107동 ***호 (호평동, 오네뜨센트럴)	주*숙
1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8-5	답	177	177	***	이*우
1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9-2	답	19	19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	곽*옥
1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1-1	전	56	56		김*희
1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1	전	63	63		김*희
1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0-2	전	69	6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	이*수
1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0-1	전	222	22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	이*수
1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3	답	378	378	5***	이*구
2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0	답	106	106	5***	이*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2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2	답	1,076	52	5**-*	이*구
2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1	답	6	6	5**-*	이*구
2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3	답	13	1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	함*옥
2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4	답	64	64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	함*옥
2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1	답	4	4	승주군 해룡면 서면 2**	최*준
2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2	답	90	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9-3 영동고덕아파트 에이동 ***호	최*용 외 1인
2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0-1	답	108	108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최산두길 *	손8자
2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9-4	도	1,235	132		국(건설부)
2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2-1	답	67	67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최산두길 *	손8자
3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3-2	전	174	174	6**-*	이*석
3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3-3	대	240	24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5 주공칠성아파트 207-***	김*필
3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8-1	도	349	23		국(국토해양부)
3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5	답	545	545	6**-*	이*석
3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6	답	164	16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90 고담베스트빌 1402-103	이정천 외 1인
3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3	답	524	524	854	박석기
3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1-1	대	200	2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록1록트 창덕에버빌아파트 104-***	김*원
3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3	대	387	387	***	이*구
3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2	대	17	17	***	이*구
3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7-2	답	201	20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평길 **-*	박*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4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6-3	답	284	21		광양시
4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13	답	30	3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평길 ***	박*기
4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14	답	3	3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평길 ***	박*기
4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1	답	255	249		광양시
4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12	답	1	1		전라남도
4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7	답	47	47		광양시
4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9	답	185	3		전라남도
4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9-1	답	294	3		전라남도
4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4	도	2	2		전라남도
4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2	도	152	91		광양시
5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5	도	55	19		전라남도
5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9	답	11	11		광양시
5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8	답	29	9		광양시
5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6	답	48	48		광양시
5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3	답	373	110		광양시
5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3-1	답	50	50		광양시
5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4-1	답	116	116	***	채*탁
5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3-2	답	454	45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	최*숙 외 3인
5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0	도	2,149	22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5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5-3	도	21	21	광양읍 읍내리 ***	김*재
6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3	답	259	227		광양시
6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2	천	442	335		광양시
6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	천	170	17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	이*모
6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9	임	60	6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록트 창덕에버빌아파트 104-***	김*근
6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7	도	175	169		국(건설부)
6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0	대	43	4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록트 창덕에버빌아파트 104-***	김*원
6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2-6	대	142	30		광양시
6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2-2	도	350	3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1	대	55	55		광양시
6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6-4	답	246	219		광양시
7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1-4	도	222	82		전라남도
7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1-1	구	1,426	116		국(농림수산부)
7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2	도	481	458		국(건설부)
7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2-1	도	631	563		국(농림수산부)
7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1	천	13,260	9,415		국(건설부)
75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1	답	1,486	300		국(기획재정부)
76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2	유	73	7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7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3	유	344	34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편입	주소	성명
78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27-3	유	96	85		국(농림수산부)
7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811-2	도	154	154		국(농림수산부)
8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811-3	천	185	185		국(건설교통부)
8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37-15	답	73	73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우동 1498 트럼프월드센텀 비-***	이*배
8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6-4	구	45	45		국(건설부)
83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2	답	104	104	봉강면 봉당리 ***	이*호
84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1-1	천	705	705		국(건설교통부)
85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2-1	답	60	60	봉강면 봉당리 ***	이*호
86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49-5	구	347	7		국(농림수산부)
87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1-2	답	47	47	부저리 ***	백*봉
88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48-4	도	573	217		국(농림수산부)
89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78-6	천	135,471	11,087		국(건설부)
9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1	유	904	90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01	도	1,732	20		국(건설부)
9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07	구	19,828	591		국(건설부)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1	감나무	2m	2	주	국(기획재정부)
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7	저온저장고		10	㎡	이*주
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6	감나무	2.5m	3	주	이*주
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5	키위나무	2m	5	주	이*준
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4-4	관정		1	개소	김*효
					매실나무	1.5m	1	주	
					매실나무	2.5m	6	주	
					키위나무	2m	8	주	
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2	보조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6-3	엄나무	2m	6	주	허*평
					감나무	3m	1	주	
					감나무	3m	2	주	
					매실나무	1.5m	1	주	
					매실나무	3m	7	주	
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3	감나무	5m	7	주	김*배
					매실나무	3m	10	주	
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7-3	엄나무	6m	1	주	주*숙
					감나무	3m	2	주	
					매실나무	2.5m	6	주	
					두릅나무	2m	1	주	
					석류나무	2m	1	주	
					구기자나무	1m	1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1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8-5	매실나무	3m	10	주	이*우
					사과나무	2.5m	7	주	
1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0-1	밤나무	4m	37	주	이*수
					비파나무	3m	1	주	
					감나무	3m	6	주	
					살구나무	5m	1	주	
					매실나무	4m	4	주	
					엄나무	2m	4	주	
1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3	감나무	4m	20	주	이*구
					헨스	H=1.8	6	m	
					헨스	H=1.8	3	m	
1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0	감나무	4m	8	주	이*구
1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2	대추나무	3m	1	주	이*구
1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3	철쭉묘목	0.3m	100	주	함*옥
1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4	철쭉묘목	0.3m	100	주	함*옥
					매실나무	1m	1	주	
1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1	철쭉묘목	0.3m	50	주	최*준
1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2	철쭉묘목	0.3m	50	주	최*용외1인
1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0-1	움막		17	m ²	손*자
2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9-4	한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오수맨홀		1	개소	국(건설부)
					움막		12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2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2-1	아로니아	2m	2	주	손*자
					옴막		2.3	m ²	
2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3-2	담장	H=1.5	4	m	이*석
					본체		11	m ²	
					두릅나무	2m	40	주	
					매실나무	2.5m	9	주	
					감나무	4m	4	주	
					사과나무	2m	1	주	
					잰피나무	1m	7	주	
					목련나무	5m	3	주	
2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3-3	창고		9	m ²	김*필
					본체		24	m ²	
					담장	H=1.5	23	m	
					대문	2.0*2.0	4	m ²	
					보안등		1	개소	
					감나무	4m	1	주	
					비파나무	4m	1	주	
					엄나무	2m	2	주	
					감나무	3m	1	주	
					무화과	2m	1	주	
					동백나무	5m	1	주	
					사철나무	2m	30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2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5	창고		99	㎡	이*석
					감나무	4m	2	주	
					철쭉	0.5m	1	주	
					매실나무	2m	31	주	
					감나무	2.5m	2	주	
					사과나무	2m	5	주	
					복분자	1.5m	2	주	
2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6	가건물		29	㎡	이*천외1인
2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3	한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2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3	황금촉백	3m	3	주	이*구
					비파나무	4m	1	주	
					감나무	4m	1	주	
					한전주	10m	1	본	
					감나무	4m	2	주	
					오수맨홀		1	개소	
					은행나무	8m	1	주	
					소나무	1.2m	1	주	
					동백나무	2.5m	1	주	
					철쭉	1.2m	1	주	
					통신주	8m	1	본	KT
2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7-2	참다래나무	1.6m	2	주	박*기
					감나무	3.5m	1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2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3	전나무	3.5m	15	주	광양시
					매실나무	1.5m	2	주	
					동백나무	3m	10	주	
					한전주	10m	1	본	
3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4-1	소나무	3m	4	주	채*탁
					감나무	2.5m	6	주	
3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3-2	소나무	3m	47	주	최*숙외3인
3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3	오수맨홀		1	개소	광양시
3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2	오수맨홀		1	개소	광양시
					오수맨홀		1	개소	
					오수맨홀		1	개소	
3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9	감나무	4m	1	주	김*근
3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7	한전주	14m	1	본	국(건설부)
3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1-4	한전주	16m	1	본	전라남도
3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2-1	통신주	8m	1	본	국(농림수산부)
					한전주	14m	1	본	
					컨테이너		27.1	㎡	
3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1	매실나무	1.6m	17	주	국(건설부)
					매실나무	1.5m	6	주	
					오수받이		1	개소	
					오수받이		1	개소	
					오수맨홀		1	개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3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1	키위나무	2m	11	주	국(건설부)	
					장미	2m	2	주		
					체리나무	2m	2	주		
					자두나무	2m	1	주		
					포도나무	2m	1	주		
					움막		17	㎡		
					감나무	3m	1	주		
					감나무	4m	1	주		
					창고		6	㎡		
					철쭉묘목	0.3m	2,000	주		
					감나무	4m	1	주		
					매실나무	3m	1	주		
					보조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한전주	10m	1	본		
한전주	10m	1	본							
39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1	매실나무	1.6m	11	주	국(기획재정부)	
					매실나무	1.5m	13	주		
4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48-4	한전주	10m	1	본	국(농림수산부)	
4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78-6	매실나무	3m	96	주	국(건설부)	
					전나무	5m	6	주		
					동백나무	3m	9	주		
					소나무	4m	4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4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78-6	철쭉	0.5m	150	주	국(건설부)
					창고	4.2*2	8	m ²	
					창고	4*4	16	m ²	
					저온창고	3.5*3	11	m ²	
					가로등	5m	1	개소	
					하우스	2.3*1.7	4	m ²	
					매실나무	1.6m	7	주	
42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1	매실나무	3m	6	주	한국농어촌공사
4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07	감나무	4m	25	주	국(건설부)
					보리수	2m	1	주	
					매실나무	2m	2	주	
					단풍나무	6m	1	주	
					은목서	6m	1	주	
					장미	2m	1	주	

광양시 공고 제2022-257호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광양시장

1. **조례안명** :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 됨(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0. 12. 23. 공포, 2021. 1. 1. 시행)에 따라, 「광양시 재무 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코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16조에 의거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구 수정(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서식 정비(안 제11조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서식 내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법인등록번호)’ 로, ‘주소’ 를 ‘주소(사업장소재지)’ 로 변경

○ 준용 조례 명칭 변경 (안 제23조)

-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입법 예고기간 : 2022. 2. 9. ~ 2022. 3. 2.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회계과(우 57785)

- 전 화: 061-797-3273

- 팩 스: 061-797-2581(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yjch01@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선출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일자”를 “날짜”로 한다.

제23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3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시설명:		참가인 원:	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용료 산출액:	원		

위와 같이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별지4호서식]

(앞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소(사업장소재지):			
성 명 또는 : 단체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1. 사용시설명:			
2. 사용 목적:			
3. 사용 시간: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 원:			
5. 사 용 료:			
6. 허가 조건: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6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주소: (사업장소재지)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감면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u>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①<u>복지회관</u>은 광양시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한다.</p> <p>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u>선출하며</u>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⑤ (생략)</p> <p>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② (생략) ③<u>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u>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같은 항</p>	<p>제1조(목적) ----- ----- ----- <u>종합복지회관</u>----- ----- ----- -----.</p> <p>제2조(위치) ①<u>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u>----- -----.</p> <p>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호선(互選)</u>하며-----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u>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u>제8조제1항제2호</u> ----- -----</p>

현행	개정안
<p>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p>	<p>----- ----- ----- -----.</p>
<p>제11조(사용허가) 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u>일자</u>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날짜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u>광양시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23조(준용) ----- ----- ----- 「<u>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